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기획재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0월 24일, 윤준병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0월 2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4. 11. 1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소위원회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2024. 11. 15.)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회의(2024. 11. 18.)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소위회의(2024. 11. 19.)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소위회의(2024. 11. 20.)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소위회의(2024. 11. 21.)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소위원회(2024. 11. 22.)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소위원회(2025. 11. 20.)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소위원회(2025. 11. 24.)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소위원회(2025. 11. 25.)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소위원회(2025. 11. 26.)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소위원회(2025. 11. 30.)

상정, 의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2025. 11. 30.)

상정, 찬반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윤준병의원)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해당 특례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민간기업의 출연 확대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있음. 그러나, 특례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인 동시에,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공제비율이 낮아 참여 확대의 유인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 및 농어촌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민간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인세 공제비율을 기존 10%에서 50%로 상향하고, 감면의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검토보고서 참조.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박수영)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동 개정안 등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생략.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